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55

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서삼석·송갑석·이개호

주철현 • 전용기 • 허 영

윤후덕 • 이상직 • 신정훈

박 정・신영대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,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, 해양안전·안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.

따라서 「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 제정을 통해해양경찰청의 임무·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도록 함.

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1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3. 「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양 여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